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국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5865

발의연월일: 2024. 11. 26.

발 의 자:정성국·박수영·이인선

곽규택 • 이헌승 • 조경태

김용태 · 서천호 · 최보윤

김대식 의원(10인)

제안이유

일부 학원 및 미인가 교육시설이 적법한 인가를 받지 않고 사실상학교처럼 운영하면서 학생과 학부모에게 고액의 사교육비를 부과하는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교육시설이 폐쇄될 경우 재학하던 학생과 학부모는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학습의 기회 또한 크게침해를 받고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임.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학교설립인가를 받지 않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폐쇄를 명할 수 있고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동법 제67조제3항제3호에 따른 처벌이 가능하나, 행정소송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제재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폐쇄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폐쇄명령을 받은 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그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취학의무 방기를 조장하고 공교육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해 실효적인 제재 방안을 마련하고,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폐쇄 명령에 대한 이행강제금(안 제65조의2 신설)

- 1) 「초·중등교육법」 제65조에 따른 폐쇄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 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최대 1억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2) 이행강제금의 부과 전 계고 방법 및 계고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기준 등을 규정함.

법률 제 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65조의2(이행강제금) ① 관할청은 제65조제1항·제2항에 따른 폐쇄 명령을 받은 자가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1억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 ② 관할청은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설의 폐쇄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문서로 계고(戒告)하여야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문서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및 불복 방법 및 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④ 관할청은 최초의 폐쇄 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의 범위에서 그 폐쇄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 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 ⑤ 관할청은 폐쇄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 이행 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 ⑥ 관할청은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 강제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행정제재・부 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 ⑦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 </u>	제65조의2(이행강제금) ① 관할청으 시65조의1항·제2항에 따른 폐쇄 명령을 받은 자가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1억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② 관할청은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설의 폐쇄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문서로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문서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및 불복방법 및 기간 등이 포함되어야한다. ④ 관할청은 최초의 폐쇄 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의 범위에서 그 폐쇄 명령이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 ⑤ 관할청은 폐쇄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 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 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 ⑥ 관할청은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 ⑦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